

16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
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9-153호 1999. 5. 3.

개정이유

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제가,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일반건설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무하도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.
- 나.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·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라.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10분의 1로 완화함.
- 마.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, 외부

전문가 위원을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공제조합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.

- 바.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,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업체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.
- 사.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실적금액을 업종별로 5천만원 내지 6억원에서 1억원 내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명목상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수주질서의 문란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.
- 아.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.
- 자.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공능력의 평가·공시 및 건설산업종합 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·공제조합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.
- 차. 전문건설업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·단순화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함.
- (1) 조적공사업과 미장·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·미장·방수공사업으로 함.
- (2) 비계·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·그라우팅 공사업을 통합하여 기초·해체공사업으로 함.
- (3) 지붕·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축물조립·판금공사업으로 함.
- (4)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내지 제3종을 통합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함.
- 카.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조정함.
- (1) 철도·궤도공사업, 포장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

기준중 기술능력 등 일부기준을 완화함.

- (2)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수목재배용 토지는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어야 하던 것을 등록 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로 이용되면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.
- (3)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(현행 제1종 내지 제3종)의 신청자격요건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자본금 1억원을 갖추도록 보완함.
- (4)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(현행 제4종 및 제5종)과 난방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함.
- 타.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경력이 있는 자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공관리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.
- 파. 건설업자가 일괄하도록하거나 부실시공의 정도가 경미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.